

의안번호	2207055
의 퇴 인	이재관 의원
회 답 일	2025. 3. 13.
추계번호	24A63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호 자목 신설 (정의)	산업기술의 범위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¹⁾ 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중요핵심전략기술 ²⁾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포함	재량규정
3	안 제9조의2제1항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현행법 제9조의2 이하의 조문에 제시된 국가핵심 기술 ³⁾ 에 “중요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의무규정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요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제1호자목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중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호 자목 신설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3	안 제9조의2제1항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기술⁴⁾의 범위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을 포함하고, 이 중 일부를 “중요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이 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내용

4)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또는 (...)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①산업기술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산업기술 보호교육 및 산업보안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②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및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보호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경우 신규 보호지침 마련에 따른 연구용역비나 산업기술보호교육 및 산업보안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금·보조금·위탁사업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중 중요핵심전략기술을 별도로 지정하여 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지정을 위한 심의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 중요핵심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안건 증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이 증가할 수 있음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요인

개정안 내용	조문	내용	비용 예시
산업기술에 핵심전략기술 포함	제8조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지침 제정	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제17조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비
	제19조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산업기술 보호교육	교육을 실시할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제20조	대상기관의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소요 비용 출연·보조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대상기관에 대한 출연금·보조금
	제22조	대상기관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자문 등 지원	산업기술 보호 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보조금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항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검토수당
국가핵심기술에 적용되는 보호조치를 중요핵심전략 기술에 동일하게 적용	제11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핵심전략기술 수출 승인 등	위원회 심의 사항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제11조 의2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승인 등	위원회 심의 사항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제15조	중요핵심전략기술 침해신고 및 침해 사실 인지에 따른 조사·조치	침해 사실 조사를 위한 용역비 및 기술 보호를 위한 보조금

주: 2025.1.21. 개정되기 전 법률 제2031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조문 기준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되는 데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량 증가와 그 외 조사·보호조치 및 각종 지원 사업의 사업량 증가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비 증가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핵심전략기술 중 중요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어 향후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의 대상이 될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그 밖에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보호조치 및 교육·보안자문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사업량의 증가 수준이 정부의 재원 추가 투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⁵⁾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 예산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 등 심의 3억원, 산업기술보호교육 4억 7,200만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자문 및 기술 지원 등 7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 * [참고자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
- 이에 이 법에 따른 산업기술의 범위에 핵심전략기술을 포함하고, 이 중 일부를 “중요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이 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5)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되더라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재원의 추가 투입 여부 및 수준 등을 알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조문 ⁶⁾	편성연도	예산액	집행액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2023년	10	10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2025년	300	—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	—	—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025년	200	—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2025년	472	—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2025년	1,780	—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2025년	15	—

사업명: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일반회계, 3171-31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 제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술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